



EUROPEAN  
COMMISSION

브뤼셀, XXX

[...](2024) XXX 초안

배터리 관련 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 목록 업데이트에 관한 규정 2000/532/EC를 개정하는

X년 X월 X일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

(EEA 관련 문서)

본 규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제시된 모든 견해는 집행위원회 서비스의 예비 견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입법 이유서

### 1. 위임법률의 맥락

배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린 모빌리티, 클린 에너지 및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sup>1</sup> (이하 '이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sup>3</sup> 유럽 폐기물 목록<sup>2</sup>은 유해 폐기물을 포함하여 EU 전역의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공통 용어를 제공한다.

이 규정의 제안이유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는 새롭게 등장하는 배터리 화학물질과 빠르게 진화하는 제조 및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이 목록을 개정해야 한다. 그 목적은 다양한 폐기물 흐름에 대한 식별, 모니터링 및 소급성을 개선하고 유해/비유해 폐기물 지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여 이러한 폐배터리에 대한 적절한 분류 및 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핵심원자재에 대한 연락문<sup>4</sup>은 새로운 배터리 화학물질(특히 리튬 기반 및 니켈 기반 배터리)의 출현, 진화하는 제조 및 재활용 공정, 새로운 배터리 규정의 맥락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적절한 분류, 재활용 및 보고를 고려하여 2024년에 폐기물 목록을 목표로 개정할 것을 구상한다. 이 개정은 또한 배터리-관련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여 환경 및 인간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더 광범위하게는 이 개정안은 폐배터리의 재활용 효율성 및 신규 배터리 내 재활용 물질 함량에 대한 규칙 적용을 지원하는 잘 작동하는 재활용 가치 사슬의 맥락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새로운 코드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블랙 매스(black mass)"라고 하는 배터리 폐기물 처리에서 나온 중간 분획물을 식별하기 위해 새로운 유해 폐기물 코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분류는 EU의 글로벌 조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규정<sup>5</sup>에 따른 구성요소의 조성 및 분류에 대한 최신 정보에 의해 뒷받침된다.

배터리-관련 폐기물 흐름의 분류는 폐기물 운송 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 운송 규칙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칙은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 지침 2008/98/EC 및 규정(EU) 2019/1020를 개정하고 지침 2006/66/EC를 폐지하며,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2023년 7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1542 (OJ L 191, 2023. 7. 28, p. 1.).

2 폐기물에 관한 이사회 지침 75/442/EEC 제1조(a)에 따라 폐기물 목록을 설정하는 규정 94/3/EC를 대체하고, 유해 폐기물에 관한 이사회 지침 91/689/EEC 제1(4)조에 따라 유해 폐기물 목록을 설정하는 이사회 규정 94/904/EC를 대체하는 2000년 5월 3일자 위원회 규정 2000/532/EC (OJ L 226, 2000. 9. 6, p. 3.).

3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8/98/EC에 따른 폐기물 목록에 관한 규정 2000/532/EC을 개정하는 2014년 12월 18일자 위원회 규정 2014/955/EU (OJ L 370, 2014. 12. 30, p. 44).

4 COM (2023) 165 최종, 쌍둥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에 관한 연락문.

5 지침 67/548/EEC 및 199/45/EC 개정 및 폐지하고, 규정(EC) 1907/2006을 개정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72/2008.

폐기물 목록에 신규 배터리-관련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코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이 개정안은 알카라인 배터리에 대한 현재의 비-유해성 폐기물 코드를 모든 알카라인 배터리가 유해성 폐기물로 분류되는 새로운 폐기물 코드로 대체한다. 원래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평가에 근거한 알카라인 배터리 분류는 배터리의 관련 물질 농도와 CLP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고려하여 기술 및 과학적 진보에 맞게 조정되어 왔다.

리튬-기반 폐배터리는 특히 생활 폐기물에서의 폭발 및 화재 위험으로 인해 운송 및 처리에 있어 특정 문제를 발생시킨다. 리튬-기반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에서 별도로 수거된 분획물을 포함하는 폐기물 목록의 하위 챕터 20 01에 리튬-기반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특정 유해 폐기물 코드가 도입되었다. 이 코드는 생활 폐기물에서 분류 및 미분류된 유해 폐배터리에 적용되는 유해 폐기물 코드에 대한 대안으로 리튬-기반 폐배터리의 별도 수거가 이행되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 2. 법률 채택 전 협의

이는 기술적 법률이며, 특히 조치의 기술적 특성과 폐기물의 명확한 유해성 분류를 감안할 때 영향 평가나 공개 협의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후자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분류에 대한 기존 규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유해 또는 비유해 폐기물로 분류하는 제안은 CLP 규정과 지침 2008/98/EC<sup>6</sup> (폐기물 기본 지침)의 부속서 III에 명시된 EU 분류 규칙에 따른 성분조성 및 분류에 대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이 위임법률은 2023년 3월 31일 폐기물 전문가 그룹 협의, 2023년 11월 21일 워크숍 및 전담 이해관계자 협의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된 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JRC)<sup>7</sup>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후, 이 제안은 2024년 5월 8일 회원국 대표, 기업 및 시민 사회를 포함하여 구성된 폐기물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되었으며 2024년 6월 8일까지 서면 의견이 접수되었다. 회원국은 2024년 9월 20일 폐기물 기본 지침 제39조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 지침의 과학 및 기술적 진보에 대한 적응 및 구현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의견들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통보받았다.

이 위임법률 초안은 대중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2024년 [...]일부터 [...]일까지 규제개선포털에 게시되었다. 이 초안은 2024년 [ ]에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되었다.

## 3. 위임법률의 법적 요소

이 위임법률은 폐기물 기본 지침 제7(1)조에 따라 채택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 목록을 검토하여 지침을 보완하게 하도록 지침 제38a조에 따라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었다.

6 특정 지침 폐지 및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 (OJ L 312, 2008. 11. 22, p. 3).

7 JRC 보고서: 배터리 관련 유럽 폐기물 목록 항목의 특정 개정을 위한 기술적 권고 사항, 2024

배터리 관련 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 목록 업데이트에 관한 규정 2000/532/EC를 개정하는

X년 X월 X일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

(EEA 관련 문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고,

특정 지침을 폐지하며,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sup>8</sup>, 특히 이 지침의 제7(1)조를 고려하고,

전문:

- (1) 이사회 규정 94/3/EC<sup>9</sup>에 의해 폐기물 목록이 작성되었고, 이어서 이사회 규정 1994/904/EC<sup>10</sup>에 의해 유해 폐기물 목록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집행위원회 결정 2000/532/EC<sup>11</sup>으로 대체되었다.
- (2) 특히 리튬-기반, 나트륨-기반 및 니켈-기반 배터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배터리 화학물질이 지난 몇 년 동안 등장했으며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프로세스가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상은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 규정(EU) 2023/1542<sup>12</sup>의 맥락에서 고려되었으며 해당 폐기물 목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 (3) 규정(EU) 2023/1542는 또한 배터리-관련 폐기물(즉, 배터리 제조 폐기물, 폐배터리 및 그 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롭고 수정된 용어를 도입한다. 따라서 이는 폐기물 목록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 (4) 따라서 새로운 배터리 화학물질 및 배터리- 관련 폐기물 관리, 진화하는 배터리 시장을 고려하고 관련 폐기물 흐름의 식별 및 분류를 개선하며 배터리-관련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및 보고 작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2000/532/EC에 명시된 폐기물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5) 구성 물질의 조성 및 유해성 분류에 대한 최신 증거 기반 정보에 의거하여 특정 폐기물 흐름을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가 인간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행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폐기물 목록에 포함된 유해 폐기물 항목은 폐기물의 기원 및 조성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272/2008<sup>13</sup>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로 분류된 물질에 대한 지침 2008/98/EC 부속서 III에 법적으로 정의된 유해 물질의 적용 가능한 농도 한도값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

8 OJ L 312, 22.11.2008, p.3, ELI: <http://data.europa.eu/eli/dir/2008/98/oj>.

9

10

11 폐기물에 관한 이사회 지침 75/442/EEC 제1조(a)에 따라 폐기물 목록을 설정하는 규정 94/3/EC를 대체하고, 유해 폐기물에 관한 이사회 지침 91/689/EEC 제1(4)조에 따라 유해 폐기물 목록을 설정하는 이사회 규정 94/904/EC를 대체하는 2000년 5월 3일자 집행위원회 규정 2000/532/EC (OJ L 226, 2000. 9. 6, p. 3, ELI: <http://data.europa.eu/eli/dec/2000/532/oj>).

12 지침 2008/98/EC 및 규정(EU) 2019/1020를 개정하고 지침 2006/66/EC를 폐지하며,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2023년 7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1542 (OJ L 191, 2023. 7. 28, p. 1,

ELI: <http://data.europa.eu/eli/reg/2023/1542/oj>).

13 지침 67/548/EEC 및 199/45/EC 개정 및 폐지하고, 규정(EC) 1907/2006을 개정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72/2008 (OJ L 353, 2008. 12. 31, p. 1,

ELI: <http://data.europa.eu/eli/reg/2008/1272/oj>).

- (6) 알카라인 배터리의 분류는 배터리 내 관련 물질의 농도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272/2008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고려하여 기술 및 과학적 진보에 맞춰야 한다.
- (7)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한 리튬-기반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에서 별도로 수거된 부분을 포함한 리튬-기반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유해 폐기물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
- (8) 따라서 규정 2000/532/EC는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 (9) 운영자와 당국이 특히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거나 재분류된 폐기물에 대해 새롭고 수정된 폐기물 코드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관련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설의 구조적 및 운영적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며, 폐기물 허가 조정, 제출 및 처리를 허용하기 위해 이 규정의 적용은 연기되어야 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 제1조

규정 2000/532/EC의 부속서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된다.

#### 제2조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째에 발효된다.

본 규정은 *OP, 날짜를 입력한다 =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 제3조

본 규정은 그 자체가 완전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브뤼셀에서 제정됨.

집행위원회

위원장